

보도 일시	2023. 1. 18.(수) 12:00 <1. 19.(목) 조간>	배포 일시	2023. 1. 18.(수) 08:30
담당 부서	유통정책관 대리점거래과	책임자	과 장 오종희 (044-200-4958)
		담당자	사무관 임소현 (044-200-4959)

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 대리점 보호망 확충 - 화장품 등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-

-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 이하 ‘공정위’)는 감염병 확산 등의 외부 여건으로 인해 폐업하는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12개 업종*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다.

* 가구, 도서출판, 보일러, 가전, 석유유통, 의료기기, 기계, 사료, 생활용품, 주류, 페인트, 화장품 업종

- 이번 개정에 따라 대리점이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폐업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대리점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계약서에 모두 도입되었다.

- 대리점이 ①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②중도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식음료 등 6개 업종('22년 6월 개정)에 이어 화장품 등 12개 업종에도 추가로 규정하였다.

-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은 특히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,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을 유도·지원할 예정이다.

1

추진 배경

-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대리점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매출이 급감하여 대금 납부 지연 및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.
 - 특히, 매출이 급감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, 인테리어 및 시설·설비 비용 반환 등에 따른 부담 때문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.
- 이에 공정위는 '22년 6월 외부 여건으로 인해 대리점이 폐업하는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하고, 손해배상액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식음료 등 6개 업종* 표준대리점계약서에 규정하였고,
 - 이번에는 화장품 등 12개 업종**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추가로 규정하였다.

* 식음료, 의류, 통신, 제약, 자동차판매, 자동차부품 업종

** 가구, 도서출판, 보일러, 가전, 석유유통, 의료기기, 기계, 사료, 생활용품, 주류, 페인트, 화장품 업종

※ 대금 지연이자 감경·면제 규정은 대리점 분야 18개 모든 업종에 도입 완료('22년 6월)

2

주요 개정 내용

- 이번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폐업할 때, ①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하고, ②중도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.

* 개정 대상 조항: 가구 제18조, 도서출판 제18조, 보일러 제19조, 가전 제18조, 석유유통 제19조, 의료기기 제20조, 기계 제23조, 사료 제22조, 생활용품 제22조, 주류 제20조, 페인트 제22조, 화장품 제23조

① 계약 중도해지 사유 구체화

- i)천재지변,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ii)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iii)폐업하는 경우가 계약의 중도해지 사유임을 명시하였다.
- 이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.

< 중도해지 사유 명시 >

00조(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대리점의 계약해지)

- ①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1. 태풍,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
 2. 전쟁, 폭동,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
 3.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 및 유행하는 경우
 4. 그 밖의 대리점의 책임 없이 위 각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공급업자가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중도해지 손해배상액 감경 요청

- 신설된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대리점에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였다.
- 또한, 대리점이 손해배상액의 감경 요청을 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요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.

< 손해배상액 감경 요청 >

- ③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,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, 공급업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응답을 하여야 한다.

3

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□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은 특히 **감염병 확산** 등의 상황으로 **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리점**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공정위는 **협약이행평가**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,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개정 내용에 대한 **설명회**를 개최하는 등 관련 공급업자들의 개정 **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을 유도·지원**할 예정이다.

※ 이번에 개정된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(www.ftc.go.kr) (해당 메뉴: 정보공개-표준계약서-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)에 수록되어 있음

<붙임>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

* 별첨: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문



[붙임]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

-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(가구, 도서출판, 보일러, 가전, 석유유통, 의료기기, 기계, 사료, 생활용품, 주류, 페인트, 화장품 업종)

현행	개정안
<신 설>	제00조[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대리점의 계약해지] ①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1. 태풍,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. 전쟁, 폭동,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.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 및 유행하는 경우 4. 그 밖의 대리점의 책임 없이 위 각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공급업자가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. ③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,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, 공급업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응답을 하여야 한다.

※ [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대리점의 계약해지] 가구 제18조, 도서출판 제18조, 보일러 제19조, 가전 제18조, 석유유통 제19조, 의료기기 제20조, 기계 제23조, 사료 제22조, 생활용품 제22조, 주류 제20조, 페인트 제22조, 화장품 제23조로 조항 신설